

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067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5년 8월 1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시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「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함('15. 12. 15.)
- 나.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6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: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

나. 위치: 성북구 길음로7길 20,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

다. 규모: 지상 1~3층(총면적 2,925.23㎡, 전용면적 1,791.1㎡)

라. 주요시설: 디지털교육실, 장애인방송제작실, 편집실, 사무실 등

마. 사업주체: 시청자미디어재단(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타 공공기관)

바. 주요사업

- 미디어 교육 지원: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·체험 운영 등
- 미디어 이용자 참여 활성화: 방송제작을 위한 장비·시설·교육 지원 등
- 취약계층(장애인, 노인 등) 미디어 역량 강화 지원: 취약계층 미디어교육 운영 등
- 지역 연계 협력 강화: 청년형·협력형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

사. 출연금액(안): 299,920천원

-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(1,499,600천원)의 20% 분담
(인건비 82,700천원, 경상비 217,220천원) ※ 사업비 제외

아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

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

제4조(운영비 분담)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○ 「방송법」 제90조의2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: 2026 회계연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시청자미디어재단은 「방송법」 제90조의2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인임.

< 「방송법」 제90조의2제1항 >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.
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-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1)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- 서울시는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, 시청자미디어재단, 서울시, 성북구 4자 간에 체결된 「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 및 이후의 재협약 따라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서울센터 운영비의 20%를 출연하고 있음.

<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('20.11.) >

제4조(운영비 부담)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 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.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부담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서울센터 현황

-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에 12개소²⁾의 센터를 운영 중이며,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설립(2014년 이전)한 부산·광주 센터는 전액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, 서울센터를 포함한 10개 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비 전액과 운영비의 60%를,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40%를 분담하고 있음.

< 운영비 분담 현황 >

(단위 : %)

분담 주체	부산	광주	강원	대전	인천	서울	울산	경기	충북	세종	경남	대구
방통위	100	100	60	60	60	60	60	60	60	60	60	60
광역지자체	-	-	32	40	40	20	40	-	20	40	-	40
기초지자체	-	-	8	-	-	20	-	40	20	-	40	-

- 서울센터는 2015년 6월 성북구에 개관하였으며, 이에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분담금 40%를 서울시와 성북구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고 있음.
- 서울센터의 2025년 예산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모두 합쳐 18억 3천 4백만원이며, 운영비 15억원의 20%인 3억원을 서울시가 출연하였음.

다. 출연의 타당성

- 서울시는 서울시민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출연하고 있음.

2) 부산, 광주, 강원, 대전, 인천, 서울, 울산, 경기, 충북, 세종, 경남, 대구

○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따른 2026년 서울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5억원으로 예상되며, 이에 서울시 출연금도 3억원으로 검토 중임.

- 서울센터의 운영비 규모는 최근 5개년 간 큰 변동이 없이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.

<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현황 >

(단위 : 천원)

연 도	2022년도	2023년도	2024년도	2025년도	2026년도(안)
운영비	1,428,300	1,479,700	1,460,500	1,499,600	1,499,600
서울시출연금	285,660	295,940	294,020	299,920	299,920
출연금증감액	△1,029 (△0.4%)	10,280 (3.6%)	△1,920 (△0.6%)	5,900 (2.0%)	- (-%)

※ ('26년) 방통위 부처안 기준이며,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변동 가능
추후 정부 인건비 인상률 발표에 따라 인건비 단가 변경 적용 예정

○ 서울센터의 최근 5개년 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, 총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4년 13만 6천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음.

< 서울센터 이용자 현황 >

구 분	2020년도	2021년도	2022년도	2023년도	2024년도
총 이용자 수	87,786명	110,418명	127,658명	135,488명	136,076명
학교미디어교육 이용자 수	57,758명	29,727명	26,283명	46,491명	47,700명
사회미디어교육 이용자 수	10,864명	17,652명	21,892명	12,876명	12,341명
미디어체험 연인원	5,443명	3,539명	4,785명	5,877명	9,091명
서울지역 미디어교육지원 학교 수	29개	34개	24개	24개	22개
시청자참여프로그램 건 수*	15개/3,907분	10개/4,383분	436건	518건	600건

* 2021년도 이전에는 '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방송사/분량'으로 실적을 집계함

- 세부적으로는 방송 제작의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미디어체험이 크게 확대되었고, 학교 밖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미디어 교육 이용자 수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신청한 학교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갔음.
- 다만,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센터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삭감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, 기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.

< 서울센터 사업비 현황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2년도	2023년도	2024년도	2025년도
사업비	376,490	364,455	339,830	334,053

- 당장 부족한 사업비 내에서 서울센터가 최대 이용자 수 실적을 달성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,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인 사업비 편성 기조가 지속될 경우 서울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비만 증액 편성될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, 서울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센터의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서울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겠고,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의 미디어 권익 증진이라는 기관 운영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연 지속 여부³⁾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음.

전문위원	임창균(2180-8113)	입법조사관	홍민지(2180-8118)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3) 협약서의 효력은 정해진 기한 없이 협약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됨.